인문대 학생회 회칙

(20년 10월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생회는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사회개혁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학생회원간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대학의 진보와 자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회는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철학과, 역사학과, 아시아문화학부 일본어문학전공, 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전공, 비교민속학과, 유럽문화학부 프랑스어문학전공, 유럽문화학부 독일어문학전공, 유럽문화학부 러시아어문학전공 학생회로 구성된다.

제4조(기구) 본회는 학생총회, 단대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을 둔다.

제5조(권한)
1. 본회는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2. 본회는 회원들의 합의와 동의의 과정 속에서 사업을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회계)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의 학사과정 재적생으로 한다.

제8조(권리)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제반의 활동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9조(임무)
1.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제3장 학생총회

제10조(지위) 학생총회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1조(구성)
1.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2. 본회의 회원 1/10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또는 운영위원회 및 단대학생대표자회의 요구가 있을 시, 학생회장은 즉시 학생총회의 소집공고를 내야한다.

제12조(의장)
1. 학생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정 학생회장으로 한다.
2. 학생회장 궐위 시 본회의 부학생회장으로 한다.
3. 학생총회가 정·부 학생회장 탄핵심판을 위해 개회한 경우 단대학생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 임시의장을 학생총회 의장으로 한다.

제13조(의결) 학생총회는 재적 회원 1/8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휴학생은 출석인에 한해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14조(권한)
1. 학생총회는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학생총회는 제4장 21조에 규정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제15조(탄핵권)
1. 학생총회는 정·부 학생회장의 탄핵소추, 심판권을 가진다.
2. 학생총회는 집행위원장, 집행국장, 특별위원장의 탄핵소추, 심판권을 가진다.
3. 학생총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정·부 학생회장, 집행위원장, 집행국장, 특별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다.

제16조(탄핵심판)
1. 학생총회에서 집행위원장, 집행국장, 특별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즉시 심판에 착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2. 학생총회에서 정·부 학생회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즉시 심판에 착수하며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3. 단학대회에서 정·부 학생회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즉시 학생총회를 소집하여 심판에 착수한다.
4. 탄핵심판에서 피소추인은 항변할 권리와 토론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5. 탄핵심판에서 소추인과 피소추인은 사안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증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증인은 탄핵심판장에 출석해 증언한다.
6. 피소추인이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항변권과 토론 요청권 및 증인 소환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한다.
7. 모든 항변과 토론이 끝난 후에 표결에 부친다.

제4장 단대학생대표자회의

제17조(지위) 단대학생대표자회의(이하 단학대회)는 학생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8조(구성)
1. 단학대회는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중앙대학교 인문대학(이하 인문대) 정·부 학생회장, 각과 학생회장(단, 부 학생회장이 있을 경우 포함)과 각과 또는 학부의 학년 정대표로 구성된다.
2. 대표자 궐위 시 재적 대표자에서 제하고 발언권만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3.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학과 운영위원회 혹은 그에 준하는 기구의 동의를 얻어 그 단위 회원에게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4. 단학대회의 의장은 본회의 학생회장으로 한다.
5. 단학대회가 탄핵소추안 상정을 위해 개회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임시 의장을 단학대회 의장으로 한다.

제19조(소집)
1. 정기 단학대회는 매학기 개강 후 45일 이내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 단학대회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의장이 소집한다.
3. 임시 단학대회는 재적대표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즉시 소집한다.
4. 탄핵 소추안의 상정을 위한 단학대회는 운영위원회가 선출한 임시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의결) 재적 대표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업무 및 권한)
단학대회는 학생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본회의 제반 중요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학생대표자회의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학생총회 소집 및 요구권
2. 본회 활동의 총 노선과 운영위원회 및 각 집행부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권
3. 학생회 예산 심의 및 결산 감사권
4. 학생회칙 개정과 발의 및 의결권
5. 학교당국과 인문대 학생회 전반에 대한 제정 및 의결권
6. 기타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몇 의결권

제22조(탄핵권)
1. 단학대회는 재적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부 학생회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다.
2. 단학대회는 재적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집행위원장, 집행국장, 특별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다.
3. 단학대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될 경우 단학대회는 대표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1인을 탄핵심판을 위한 학생총회 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4. 정·부 학생회장 탄핵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3장 16조에 따른다.

제23조(안건상정) 단학대회의 안건은 의장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 또는 재적대표자 1/4 이상의 발의시 상정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25조(대회 회의록)
1. 단학대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 대회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다. 회의록의 작성은 본회의 집행국장 1인 이 작성하며 대표자 1인이 감독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6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단학대회로부터 위임받은 상설적인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27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정·부학생회장과 각 과 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제28조(겸직금지) 운영위원회는 학과 학생 대표자 외에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인문대학 학생회, 인문대학 학과 학생회 회칙이 지위를 보장하는 단체 내 소속 직을 겸할 수 없다.

제29조(소집)
1. 정기 운영위원회는 학기 중 매주 1회 본회의 정·부학생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본회의 정·부학생회장이 소집한다.
3. 단학대회에 정·부 학생회장, 집행국장을 상정하기 위해 임시 운영위원회 개회가 필요할 경우 정·부학생회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합의만으로도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본회의 제반 중요한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상설적인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2. 단학대회의 소집 요구권
3. 집행위원장, 집행국장, 특별위원장의 임면 동의권 및 출석 요구권
4. 집행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5. 특별위원회 사업에 대한 심의권
6. 제 41조에 규정된 집행부서 이외의 특별집행부서 구성 동의권 및 특별부서 구성권
7. 학생회 예산 편성 및 결산 동의권
8. 학생회칙 개정 발의권
9. 학교당국에 대한 교섭권
10.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권

11. 각종 시행세칙에 관한 동의권
12. 탄핵소추안 상정을 위한 임시 단학대회 임시 의장 선출권한

제32조(탄핵권)
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집행위원장, 집행국장, 특별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을 상정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집행위원장, 집행국장, 특별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에서 집행위원장, 집행국장, 특별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즉시 심판에 착수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집행국장을 탄핵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에서 집행위원장, 집행국장, 특별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즉시 심판에 착수하며 절차는 제3 장 16조를 따른다.

제6장 정·부 학생회장

제33조(지위) 정·부 학생회장은 학생총회, 단학대회,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제34조(선출) 정·부 학생회장은 과반수의 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5조(임기) 정·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 학년도 회계연도와 같다.

제36조(신분보장) 정·부 학생회장은 사퇴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일체의 신분이 보장된다.

제37조(겸직금지) 정·부 학생회장은 학생 대표자 외에 중앙대학 총학생회, 인문대학 학생회, 인문대학 학과 학생회 회칙이 지위를 보장하는 단체 내 직을 겸할 수 없다.

제38조(업무 및 권한)
1. 정·부 학생회장은 본회의 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2. 정·부 학생회장은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3. 정·부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외 연합기구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4. 학생회장은 본회의 학생총회, 단학대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5. 정·부 학생회장은 집행위원장, 집행국장, 특별위원장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다.
6. 정·부 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9조(탄핵)
1. 단학대회, 학생총회의 의결로 인해 정·부 학생회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우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2. 정·부 학생회장의 직무정지는 궐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탄핵심판에 의해 정·부 학생회장의 탄핵이 확정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궐위로 판단한다.

제40조(권한대행)
1. 정 학생회장의 궐위 또는 직무정지 시 부 학생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2. 정 학생회장의 궐위 또는 직무정지 상태에서 부 학생회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우 탄핵 심판까지 집행위원장이 정·부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단, 집행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집행국에서 1인을 선출한다.)

제41조(비상대책위원회)
1.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인문대학 정·부 학생회장 궐위 시 인문대 학생자치의 지속 및 정상화를 위해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학생자치 기구이다.
2. 인문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 또는 정·부 학생회장 궐위 시 잔임기간이 150일 미만일 경우에 비대위로 전환한다.
3. 비대위는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로, 정·부 학생회장 궐위 시 잔임기간이 15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집행국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의결로 비대위 내에서 정·부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단, 비대위는 운영위원회와 집행국과는 별도의 기구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4. 정·부 비대위원장은 정·부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5. 정·부 학생회장 선거의 무산으로 비대위가 구성된 경우, 정·부 학생회장 재선거 시행까지의 모든 학생회비 집행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6. 정·부 학생회장 재·보궐선거의 무산으로 비대위가 지속되는 경우,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집행기구 구성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제7장 집행위원회

제42조(지위)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에 입각하여 학생회 사업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상설적인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43조(구성)
1.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정·부 학생회장과 집행위원장 및 각 집행국장, 집행국원으로 구성된다.
2.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의 통할 하에 학생회의 사업 및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국을 둔다. (단, 예산집행자는 예산 집행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집행국 부서의 명칭은 당해 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제44조(선출)
1. 집행위원장과 집행국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동의를 받고 단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집행위원장과 집행국장은 단학대회에서 인준받기 전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활동한다.
3. 집행국원은 집행위원장과 집행국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45조(특별부서)
1.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상시적인 집행국 이외의 특별집행부서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주도로 한시적인 특별부서를 둘 수 있다.

2. 특별부서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특별부서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8장 학과학생회

제46조(구성 및 운영) 과 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은 각 과별 학생회칙에 따른다.

제9장 특별위원회

제47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권리 보장과 이익 증진을 위하여 특정 분야의 정책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8조(지위) 특별위원회는 그 설립과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상설기구로서의 지위를 보장받는다.

제49조(설립과 폐지) 단학대회 이상 의결단위에서 설립과 폐지를 의결한다.

제50조(독립성) 특별위원회는 정책, 사업, 결정 등 업무제반에 대하여 소속원 외의 지휘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제51조(운영) 각 특별위원회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개별 특별위원회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52조(위원장)
1. 각 특별위원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동의를 받고 단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각 특별위원장은 단학대회에서 인준받기 전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활동한다.
3. 각 특별위원장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특별위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다.
4.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53조(겸직금지) 특별위원장은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인문대학 학생회, 인문대학 학과 학생회 회칙이 지이를 보장하는 단체 내 소속 직을 겸할 수 없다.

제54조(예산운용)
1. 특별위원회의 예산은 인문대학생회비를 통한 재정지원과 기타 수익,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2. 학생회비 재정지원 액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정하며, 각 특별위원회별 재정지원액은 당학기 학생회비의 5%를 넘을 수 없다.
3. 특별위원회는 매월 말 결산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제9장 선 거

제55조(선거) 본회의 정·부 학생회장의 선출을 통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방법에 의한 선거를 실시한다.

제56조(시기) 매 학년도 정·부 학생회장 선거는 직전 학년도 11월 중에 실시한다.

제57조(유권자) 본회에서 실시하는 선거 유권자는 본회의 회원(매년 2월 졸업 예정자를 제외) 모두로 한다.

제58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로 구성된다.

제59조(선거공고) 선거일 및 선거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선거일 20일 이전에 반드시 공고해야한다.

제60조(후보등록자) 후보자는 후보등록 마감 직전까지 인문대학 내 5개 학과 및 학부 각 10 명 이상, 총 100명 이상의 본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

제61조(당선자 확정) 당선자는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 투표용지 수의 과반수 득 표로 당선된다.

제62조(재선거)
1. 최다득표자가 유효 투표용지 수의 과반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한다.
2. 득표 차의 수가 전체 투표의 무효표수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한다.
3. 투표율이 유권자의 50% 이하일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투표를 실시한다.
4. 투표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유권자의 50% 이하일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5. 당락의 투표수의 차가 오차의 2배가 되지 않을 경우 3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63조(보궐선거)
1. 정·부 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 잔임 기간이 150일 이상일 경우 2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단, 보궐선거 일정이 해당 학기를 벗어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2인이 보궐선거 진행까지 권한을 대행하며, 다음 학기 개강 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공고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학생회장의 임기는 전임 학생회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4조(선거시행세칙) 선거와 관련하여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한다.

제10장 재정

제6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및 기타 수익,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65조(기타수익)
1. 기타수익이란 학생회의 각종 수익사업, 기부금 등 불특정 다수에 의해 발생한 수익금을 일컫는다.
2. 기타 수익은 수익 발생이 완전히 종료된 시점에 회계 장부에 기록한다.
3. 기타 수익의 수익 발생 시점부터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세부적인 수익과 지출은 결산공고 시에 공고해야한다.

제66조(예·결산공고) 본회의 예·결산공고는 한 학기 단위로 한다.

제67조(예산편성)
1. 본회의 예산은 정책예산부서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와 단학대회 심의, 인준을 받는다.
2. 예산안이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전체 예산안의 10% 범위에서 경상비를 지출한다.

제68조(결산보고)
1. 본회의 결산은 정책예산부서에서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단학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매월 말 정책예산부서는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결산 보고서를 공고한다.
3.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정책예산부서는 재정 상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장 학생회칙 개정

제69조(제안)
1. 학생회칙 개정안은 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단학대회에 제출한다.
2. 학생회칙 개정안은 재적회원 1/10 이상의 연서로 단학대회에 제안한다.

제70조(공고) 학생회장은 회칙개정안을 최소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의결) 학생회칙 개정안은 단학대회에서 재적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72조(공포) 학생회장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를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와 동시 에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단대학생대표자회의에 의하여 제·개정되며 3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회칙을 따르는 데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현실적 불가능성이 발생하거나 회칙을 따르는 것이 본 회칙의 목적과 다르게 본회의 공리나 권익을 심각 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한 사안에 한해 임시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해당 사안에 대해 즉시 공고한다.

제4조 이 회칙 개정 당시의 회계연도는 2020년 11월 말까지로 하며, 개정된 회계연도를 2022학년부터 적용한다. 단, 2021학년도의 회계연도는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